

영주시 공고 제2022 - 784호

## 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7일

영 주 시



### 1. 개정이유

- 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주시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 집행품의 전결금액 및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금액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제명 및 인용 규정 등 정비

나. 예산집행 품의 전결 금액 변경(안 제6조제1항)

구분	부시장			국장			과장	
	공사, 토지매입	제조, 용역, 물건매입	그외	공사, 토지매입	제조, 용역, 물건매입	그외	공사, 제조, 용역, 그외	기타
당초	4억이하	2억이하	건당 1억이하	2억이하	1억이하	1건당 5천만원이하	3천만원이하	봉급, 수당, 등 수당에 따라지출 의무가 있는사항
변경	10억이하	5억이하	건당 2억이하	5억이하	2억이하	1건당 1억이하	5천만원이하	봉급, 수당, 등 수당에 따라지출 의무가 있는사항

다.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변경(안 제7조 별표 3)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비고
	당초	변경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좌동	
4. 민간위탁경비	금액제한 없음	좌동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	"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	"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	"	
8. 기타 경비	"	"	

### 3. 개정규칙안 : 붙임 1

###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주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경북 영주시 시청로 1(휴천동 470)  
받는사람 : 영주시장(참조 : 회계과장)  
연락전화 : (054)639-6481  
E-mail : kja5121@korea.kr, FAX : (054)639-6489

〈붙임 1〉

영주시 규칙 제 호

## 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5항”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4억원”을 “10억원”으로, “2억원”을 “5억원”으로, “1억원”을 “2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억원”을 “5억원”으로, “1억원”을 “2억원”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7조 중 “규칙 제22조제3항”을 “훈령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 중 “규칙 제49조”를 “훈령 제32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규칙 제97조”를 “훈령 제77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규칙 제135조제1항”을 “훈령 제105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3은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영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영주시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영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 중 「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영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영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공통사항란 제12호 중 “1억원 초과”를 “2억원 초과”로 하고,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를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로 하며,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를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로 하고, “3,000만원 이하”를 “5,000만원 이하”로 한다.

[별표 3]

##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5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	5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금액제한 없음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	
8. 기타 경비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계약사무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5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제1관서 및 읍면동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p> <p>1.·2.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p>	<p style="text-align: center;"><u>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p> <p>제5조(계약사무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4항----- ----- ----- ----- -----.</p> <p>1.·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 ----- -----</p>



부시장, 국장, 실·단·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 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 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  
-----.

1. ----- 10억원 -----  
-----  
--- 5억원 -----  
-----  
----- 2억원 -----  
-----

2. ----- 5억원 -----  
-----  
--- 2억원 -----  
-----  
----- 1억원 -----  
-----

3. ----- 5천만원 -----  
원 -----  
-----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  
-----

한도” 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제8조(지출의 절차) 규칙 제4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 중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한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생략)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생략)

-----  
-----.

제8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  
-----  
-----  
-----  
-----  
-----  
-----  
-----  
-----  
-----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  
-----  
-----  
-----  
-----.

② (현행과 같음)